

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

264

제출일자 : 1994. 11. 21

제 출 자 : 사 하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'93. 12. 27 개정된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'91. 4. 16이후 동결되어 온 '분뇨수집·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'를 적정히 상향조정하고,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지역별 정화조 청소를 강화하여 청소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.

- 지역별 청소시행을 원칙으로 하되, 상가 등 지역특성에 따라 일부를 제외할 수 있게 함(안 제3조 제3항)
- 지역별 청소의 미참여 시설에 대하여 할증료를 가산함으로써 지역별 청소를 정착화시키고, 이에 따른 능률향상으로 수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함(안 제8조 제2항)

나. 분뇨수집·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조정함

- '91. 4월 이후 동결된 수수료를 인상함(안 제8조 제1항 별표 2)
 - 분뇨수집·운반수수료 : 18ℓ당 267원(10ℓ당 148원) → 10ℓ당 200원
 - 정화조 청소 수수료 - 기본(0.75㎡당) 14,725원 → 16,200원
 - 초과(0.1㎡당) 1,040원 → 1,170원
 - 할증(신설) 기본 및 초과수수료의 5%

다. 법 개정에 따른 내용 조정

- 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한을 정하지 아니함(안 제15조 제3항)

라. 기타 현행조례 개선

- 처리수수료 대행징수 교부금의 지급을 의무화함(안 제12조)
- 규칙에 대한 위임사항을 명확히 함(안 제24조)

3. 관계법령

-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

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구청장은 정화조 등의 청소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역특성과 개별 정화조 등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 3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내의 정화조 등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 8 조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3조 제4항에 의거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정화조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1항에서 정한 정화조청소수수료에 별표 2의 할증요금을 가산한다. 다만, 제3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이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2조 중 “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.”를 “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15조 제3항 중 “허가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”을 “기타 필요한 사항은”으로 한다.

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〈별표 2〉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제3조(정화조 등의 청소통지) ①~② (생략) ③ 구청장은 정화조 등의 청소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정화조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. 〈신설〉	제3조 (정화조 등의 청소통지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구청장은 정화조 등의 청소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역특성과 개별정화조 등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.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 내의 정화조 등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
제8조(수수료 부과 · 징수) ① (생략) 〈신설〉	제8조(수수료 부과 · 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3조 제4항에 의거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정화조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1항에서 정한 정화조청소수수료에 별표2의 할증요금을 가산한다. 다만, 제3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이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(생략) ③ (생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12조(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)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수수료를 대행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.	제12조(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).....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제15조(분뇨관련 영업허가) ①~② (생략)	제15조(분뇨관련 영업허가) ①~② (현행과 같음)
③ 구청장이 분뇨관련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정화조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, 수집·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<u>허가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</u> 규칙으로 정한다.	③ <u>기타 필요한 사항은</u>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	제2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규칙으로 정한다.</u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	행		개 정 (안)		
〈별표 2〉 분뇨수집·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(제8조 제1항 관련)				〈별표 2〉(제8조 관련)		
구 분	부과기준	수 수 료	적 용 기 준	구 분	부과기준 수·수 료 적 용 기 준	
분뇨수집 운반수수 료	18ℓ	267원	• 부산직할시분뇨처리에 따른수수료징수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비 포함 금액임 •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. • 요금계산시 10원미만은 버린다.		10ℓ 200원	• 부산직할시분뇨처리에 따른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• (삭 제)
정화조청 소수수료	기본금액 0.75㎡당 (단, 0.75 ㎡미만은 0.75㎡로 본다) 초과금액 0.1㎡당 (신설)	14,725원 1,040원	• 부산직할시분뇨처리에 따른수수료징수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비 포함 금액임 • 청소된 오니(오수를 포함한다)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. • 요금계산시 100원미만은 버린다.		기본 16,200원 0.75㎡ 이하) 초과금액 1,170원 0.1㎡당 할증 기본 및 (개별 초과료 청소시) 의 5%	• 부산직할시분뇨처리에 따른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• •

[별표 2]

분뇨수집·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(제8조 관련)

구 분	부 과 기 준	수 수 료	적 용 기 준
분뇨수집·운반 수 수 료	10ℓ	200원	- 부산직할시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- 배출자로부터 수집·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.
정 화 조 청 소 수 수 료	기본(0.75㎡ 이하)	16,200원	부산직할시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.
	초과(0.1㎡당)	1,170원	청소된 오니(오수포함)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.
	할증(개별청소시)	기본 및 초과료의 5%	요금계산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.